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마루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36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2월 8일

발 의 자 : 박마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인홍·유 용·김동율·김제리·
최호정·김태수·송재형·이순자·
남창진·맹진영·유광상·이병해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4562호, 2017. 2. 8. 공포, 2017. 8. 9. 시행)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.
이에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를 확충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추가로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- 나.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차별을 금지하고”를 “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차별과”를 “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대받은 장애인”을 “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장애인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의3 전단 중 “장애인 학대”를 “장애인학대”로 한다.

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 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
 5. 그 밖에 쉽터에 입소하거나 쉽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쉽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복지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<u>차별을 금지하고</u>,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<u>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-----.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의2(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센터는 <u>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9조의2(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 장애인”이라 한다)-----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제9조의3(운영 위탁)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의3(운영 위탁) -----

----- 장애인학대-----

제10조(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3.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
4.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

및 자립 지원

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~ 제12조 (생략)

제11조 ~ 제13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